

유럽 유기농업의 발전 현황과 전망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장철이

I. 머리말

유기농업은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으로 그 의미가 크게 증가하였다. 안전한 식량의 공급과 지역자원을 보존하는 농업 및 환경보호 등과 관련해 유기농업의 육성은 오늘날 지구상 많은 나라들에서 중요 의제로 채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의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유기농업은 현재 세계 110여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실천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2년 지구상 유기농업 재배면적이 총 1,700만 ha 이상에 달했다 (Yussefi, 외 Willer, 2002). 이러한 유기농산물 생산의 증가와 함께 유기식품시장 또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유럽과 북미, 일본 등과 같이 큰 시장이 있는 나라들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기농업이 널리 도입되고 발전하고 있지만, 그 도입배경과 뿌리, 발전과정 및 그 형태 등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이에 본고는 세계 유기농업을 주도하고 있는 유기농업이론의 모체이자 세계 유기농업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럽 유기농업의 발전현황 및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들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유럽 유기농업의 발전현황

1. 생산

1) 생산현황

2001년은 유럽 유기농업에 있어서 역사적인 해였다. 2000년 말 유럽대륙을 덮친 - 독일에서는 2명의 장관이 사임하는 결과로까지 물아넣었던 - 광우병파동으로 2001년 초 유기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유럽 각국에서 크게 증가했다. 또한 2001년 처음으로 유럽연합의 각국 농림부장관들과 유기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대표자들이 모여 “유럽차원의 유기농업발전 실행계획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유기농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Lampkin (1999)에 따르면, 1986부터 1999년까지 유럽연합에서 유기 재배면적이 매년 평균 25

%씩 증가했다. 이 때 가장 큰 성장을 보인 나라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지중해연안국들이다. 뿐만 아니라 1990년 말부터 독일과 영국에서도 큰 성장이 있었다.

독일에서도 2001년은 “바이오 봄”的 해였다. 그러나 지난 2~3년은 유기농업 성장률이 조금 감소하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독일사회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기불황과 언론의 유기식품오염(예, Nitrofen검출)에 관한 스캔들기사의 보도 여파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독일에서 유기재배면적은 전년도 대비 5.3 %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으며, 유기농가수도 5.4 %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유기식품 가공농가와 수입업자도 전년도 대비 11%로 매우 크게 증가했다, 이를 통해 2003년 독일에서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생산자, 가공업자, 수출업자 등이 총 20,367명에 달했다 (BVEL, 2004a).

2001년 초 바이오 봄의 해를 시작으로 유기농업의 육성은 독일 정부의 핵심 농정책이다. 즉 독일 농림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체농업의 20 %까지를 유기농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육성정책을 통해 유기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추정해봤을 때, 2010년 약 340만 ha가 유기재배 될 것이며,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독일에서 유기면적은 매년 약 25 %씩 증가해야 한다.

2001년 초 유럽연합회원국에서 약 13만 농가에 의해 총 380만 ha가 유기 재배되었다. 이 때 유기 재배면적과 유기 농가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이탈리아로 100만 ha 이상이 유기 재배되었는데, 이는 EU의 유기재배 전체 면적의 1/4보다도 많은 면적이다 (Yussefi와 Willer, 2002). 독일에서는 2003년 말 16,476 농가가 734,027 ha의 면적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함으로써 (BVEL, 2004a). 1995년에 비해 농가수와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유럽의 전체 농경지면적 중에 유기 재배되는 면적이 약 2.9 %이고,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수는 전체 농가수의 거의 2 %에 해당한다. 이 때 유럽국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농경지면적의 거의 10 %, 심지어 리히텐슈타인에서는 17 % 이상이 유기농으로 재배된다 (Yussefi와 Willer, 2002). 독일에서는 2003년 농가수의 3.9 %, 전체 농경지 면적의 4.3 %로써, 유기농업이 전체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유럽연합국과의 비교시 평균치를 보이고 있다.

2) 생산자단체의 기본규약과 EU-유기농업 규정에 따른 유기농업

독일에는 현재 독일에서 가장 큰 유기농업 단체인 Bioland와 가장 오래된 단체인 Demeter 외에 Naturland, Biokreis, ECOVIN-Bundesverband Ökologischer Weinbau (ECOVIN), Gää, Ökosiegel, Biopark 등 총 9개의 유기농업 생산자단체가 있는데, 이들 유기농업 생산자단체들은 2002년 6월 26일 유기식품가공 그리고 판매 대표자들과 함께 유기농업관련 중앙기관으로 “유기식품연합 (BÖLW)”을 설립하였다.

독일 유기농가의 대부분이 이러한 유기농업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그 회원단체의 유기농업 생산 규약에 따라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외에 나머지 농가들은 EU-유기농업규정의 생산 기준에 따라 재배하고 있다. 2003년 전체 유기농업 실천농가 중 9,566 농가가 총 515,254 ha를 이러한 생산자단체 기본규약에 따라 재배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농가수가 1.6 % (153 농

가), 재배면적은 4.5 % (22,148 ha)가 증가한 것이다 (Yussefi 외, 2004). 한편 EU-유기농업 규정에 따라 유기농업을 실천한 농가는 총 6,910으로, 이때 총 218,773 ha의 경지면적이 이 EU-유기농업 생산기준에 따라 재배되었다.

2003년 독일의 전체 유기농업 실천농가 중 이러한 생산자단체 회원농가가 58.06 %이며, 이들에 의해 재배되는 면적은 전체 유기 재배면적의 약 70.20 %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EU-유기농업 생산기본규약에 따라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가수가 늘어나, 1996년 전체 유기농업실천농가 중 차지하는 비율 12.08 %에서 2003년 41.94 %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들 농가에 의해 재배되는 유기면적이 전체 유기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같은 기간 7.71 %에서 29.80 %로 약 4배 가까이 늘어났다.

3) 독일 유기농업 실천농가의 생산 구조

독일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의 평균 농가규모는 2003년 53 ha다. 이를 통해 1999년보다 약 2 ha가 증가했다.

이러한 농가규모는 구 동/서독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Statistisches Bundesamt, 2003), 구 서독지역에 있는 유기농가의 농가규모는 약 34 ha인 반면에 구 동독지역에서 이는 약 187 ha 이었다. 이를 통해 1999년에 비해 구 서독지역에서 유기농가의 농가규모는 2 ha 증가했지만, 구 동독지역에서는 약 4 ha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독일 유기농가의 농가규모는 관행농가의 평균 농가규모 (40.5 ha)보다 크다. 또한 1999년부터 농가규모별 - 농가규모 2 ha 미만의 농가 제외 - 모든 농가에서 유기농업실천 농가수가 증가했는데, 그 중 특히 2~30 ha 까지의 농가규모를 가진 농가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구 서독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에 반해 동독지역에서는 50 ha 이상의 농가규모를 가진 대농이 약 57 %를 차지한다.

2003년 유기농가의 재배면적 증가는 무엇보다 영년초지의 증가에 기인한다 (1999년 대비 63 % 증가) (Statistisches Bundesamt, 2003). 이러한 영년초지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구 서독지역에서 영년초지의 증가에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유기재배면적의 약 57%가 이런 영년초지이다. 영년초지 외에 일반 유기경종도 1999년에 비해 38 % 증가했다. 이 때 무엇보다 우선 구 동독지역에서 50 %의 증가가 있었다. 다년생작물의 재배는 유기농업에서 비교적 일정한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1999년과 2003년 경작지 재배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03). 즉, 유기 경종면적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이 곡류고, 그 다음이 사료작물과 휴경지이다. 특히 경종면적에서 휴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콩과류도 작부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료작물과 서류의 재배면적은 1999년에 비해 조금 감소했다. 2003년 독일에서 11,000 이상의 농가가 유기축산을 하고 있는데, 이들 농가의 77 %가 소, 21 %가 돼지 그리고 18 %가 양을 사육하고 있다. 이 때 소 사육 농가의 44 % 가량이 젖소농장이다.

1999년과 비교해서 유기축산농가수가 약 50 % 증가했다 (Statistisches Bundesamt, 2003). 이와 함께 소의 사육두수는 43 %, 돼지는 28 % 증가했다. 유기축산농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유

기 양 축산 농가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돼지와 가금류의 고기 생산은 비교적 의미가 적다. 유기축산농가의 농가구조가 구 서독지역과 동독지역간에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돼지와 소 축산에서 구 동독지역에서는 농가당 평균사육두수가 구 서독지역의 유기축산농가에서 보다 약 3~4배 많은데, 근본적인 구조차이는 특히 젖소사육에서 나타난다. 즉 구 동독지역에서는 농가당 평균사육두수가 111이고 서독 지역에서는 26이다.

독일 유기농가는 재배연도 2002/03년에 농가당 33,599 유로, ha 당 337 유로의 수익을 냈는데, 이는 관행농가에 비해 각각 22 % 많다 (BVEL, 2004b). 또 농가 1인당 수입은 약 20,544 유로에 달함으로써, 관행농가에 비해 약 14 % 많다. 농가형태에 따른 비교에서도 유기농가가 더 많은 수익을 보인다. 일반경종농가의 경우 농가당 35,092 유로로 최고의 수익을 달성했는데 이는 관행농가에 비해 7 % 많은 것이다. 사료 생산농가는 농가당 수익이 34,240유로 (452 유로/ha)로 관행농가보다 24 %, 복합농가는 농가당 평균 30,927 유로로 관행농가보다 11 % 많다.

2. 인증제도

1) 유기농업 기본규약

1991년 6월 24일 유럽연합 농업장관회의에서 »EU-규정 2092/91«의 “유기농업과 유기농산물 및 식품 표시에 관한 규칙”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EU-회원국은 모든 유기식품의 생산과 판매 시에 이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 당시 EU-유기농업규정은 단지 식물성 유기식품들만을 규율대상으로 했으나, 1999년 7월 19일의 유럽연합 농업장관회의에서 “EU-유기축산규정 1804/1999”이 통과되어 2000년 8월 24일부터 모든 EU-회원국에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비로소 유럽차원의 총괄적인 유기농산물 생산과 표시기준이 명확하게 법제화되었다.

유기식품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제정의 움직임은 유럽의 비유럽연합국들에서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다 (Yussefi 외, 2002). 하지만 이들 국가들뿐만 아니라 제3국가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식품이 EU-회원국으로 수출 판매되기 위해서는 EU-유기농업규정의 생산규칙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부합하는 인증검사도 함께 거쳐야 한다.

독일의 유기농업 생산자단체들은 1988년 유기농업재단 (SÖL)의 주도하에 유기농업연합회 (AGÖL)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미 1984년 이들 생산자단체들 간에 공동 유기농업 기본규약이 마련되었고, 이 AGÖL-기본규약은 개별 회원생산자단체들이 자체 내 유기농산물 생산기준을 정립하는데 토대가 되었다.

유기식품 생산에 관한 AGÖL-기본규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EU-유기농업규정 2092/91보다 엄격하다. 그 한 예로, EU-규정은 특정한 상황에 따라 농장의 일부만을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전환”을 허용하고 있지만, 독일의 AGÖL은 반드시 농장 전체를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GÖL, 1996; BVEL, 2004c). 이러한 “전체전환”은 독일에서 유기농업 육성정책에서도 농가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Nieberg 외, 2001).

2) 검사와 인증

EU-회원국에서 유기식품의 인증검사는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국가가 인증업무를 위임한 민간 인증단체들이 이를 대행하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독일에서 유기식품의 인증은 후자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독일은 연방국가로서, 이에 따라 각 주에 총 16개의 유기식품인증 담당관청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현재 22개의 민간검사단체를 승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BVEL, 2004a). 이들 민간검사단체들은 현장에서 농가와 인증을 위한 검사계약을 체결하고, 농가가 EU-유기농업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는 이를 검사단체의 인증프로그램을 따를 의무가 있다.

3) 유기식품 표시

1999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차원의 유기식품을 위한 로고를 제작하였는데, 이는 EU-유기농업규정 2092/91에 따라 생산, 인증된 상품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EU-로고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많은 회원국들은 자국 고유의 유기농업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체 내의 유기식품 인증마크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들 법규 중 일부는 EU-유기농업규정이 마련되기 이미 오래전부터 제정,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 같은 국가차원의 유기식품인증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는데, 예를 들어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에서 이러한 국가인증은 그들 나라에서 유기식품 븐이 일게 된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Yussefi 와 Willer, 2002). 이를 통해 우리는 EU-유기농업규정과 인증표시제도가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는 이러한 국가차원에서의 제도마련을 통해 더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현재 독일 유기농업생산자단체들은 각각 고유의 유기식품 인증마크를 가지고 회원농가 및 기업의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인증해주고 있다. 이러한 생산자단체들의 유기식품 인증마크는 독일 내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Demeter, Bioland, Naturland 등이다.

생산자단체의 인증제도와 함께 독일에서는 2001년 9월부터 EU-유기농업규정에 따라 정부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병행되고 있는데, 독일주정부는 이러한 국가인증마크가 빨리 농산물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사무소인 “Öko-Prüfzeichen GmbH”를 설립하고 2002년 “고품질의 상표 바이오 (Bio in Markenqualität)”라는 모토아래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벌였다. 이에 현재 1.0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2만개 이상의 상품이 이러한 정부의 유기식품 인증마크를 획득했는데, 이 때 특히 가공과 유통판매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BVEL, 2004a).

이러한 정부차원의 유기식품 표시인증제도는 점차 크게 확대되어가는 유기식품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기식품시장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3. 육성 정책

1) 재정적 지원 정책

유기농업은 일반적으로 환경보호 및 농촌 지역 자원의 보존이라는 생태학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기농업을 통해 유럽에서는 과잉 생산에 의한 시장문제 해소와 농촌지역에서의 일자리 확보라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함께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기농업에서는 관행농업에 비해 생산과 가공에 더 많은 노동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유기농산물은 일반농산물에 비해 고가격으로 판매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유기농업으로 전환 후 일정한 기간 즉, 전환기간 (최소한 2~3년) 안에는 생산물이 유기농산물로 인증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가격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전환 후에는 흔히 새로운 유통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등 생산과 유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특히 이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들은 “의제 2000의 지역 개발을 위한 규정 (EU-regulation 1957/1999)”에 따라 유기농업으로의 전환과 유지를 위해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들(EFTA)과 동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이와 같은 형태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Yussefi 와 Willer, 2002).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은 회원국들의 실행 여건에 맞게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1989년부터 다양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유기농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육성방안들은 1992년까지 “유럽연합의 조방화 프로그램 (Extensification Programme)”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994년부터는 “EU 규정 2078/92 (Council Regulation (EEC) EEC No. 2078/92)”을 기초로 한 각 지방 정부의 농업환경프로그램에 따라 혹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EU 규정 1257/1999”의 22조와 24조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결과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유기 농가들이 크게 늘어났으며, 유기농산물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이들 육성프로그램들의 재정적 지원은 유럽연합과 각 지방정부 그리고 독일의 가장 큰 환경단체인 BUND가 “농업구조의 향상과 해안보호를 위한 과제 (GA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분담하고 있다. 독일에서 유럽연합의 재정적 지원 비율은 구 서독지역에서는 50%, 구 동독지역에서는 75%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전체 지원하거나, BUND와 지방정부가 60:40의 비율로 나누어 부담한다 (BVEL, 2004a). 지난 2002년 독일에서 유기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약 1억 유로의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004년 BUND의 GAK 프로그램을 통한 유기농업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액의 기준을 보면, 곡물을 비롯한 일반작물과 초지의 경우에는 전환시 ha당 210유로 그리고 계속 유지의 경우에는 각각 ha당 160유로가 지불된다.

뿐만 아니라 “EU의 유기농업 규약”에 따라 인증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ha당 35유로가 추가적으로 지불된다. 하지만 이 추가지불액수는 농가당 530 유로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각 지방 정부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 지급액수를 20% 까지 상향 조절할 수 있고 30% 까지 하향 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생산 지원 보조금 외에도 가공과 유통지원금, 품질과 환경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보조금, 각종 생산, 가공 유통관련 시설투자비용의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육성정책이 있다.

2)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실행 계획

일반적으로 보조금 지불정책만으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을 충분히 유도해 낼 수 없으며, 심지어는 장기적 지속유지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1990년대 중반부터 많은 나라들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하나로써 2001년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2개 유럽국 농림부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기식품과 유기농업-파트너쉽과 활동”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갖고 “유럽차원에서의 유기농업발전을 위한 실행계획 (European 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Organic Farming and Food)”의 수립에 합의했으며, 그에 따라 2004년 6월 1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실행계획서를 유럽의회와 중앙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실행 계획서에는 정보화를 통한 유기식품 시장의 발전과 유기농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EU의 유기농업과 인증규정의 개선과 강화라는 3가지 주요 핵심 안에 따라 21개의 실천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실천 과제들은 유럽연합국간의 협력과 공동 전략을 통해 유럽 유기농업의 빠르고 지속적인 성장을 근본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 주정부의 “유기농업 프로그램 (Bundesprogramm Ökologischer Landbau)”의 기본골격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실행계획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이를 가지고 독일정부는 여러 가지 유기농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유기농업 프로그램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인 성장을 기본으로 한 독일 유기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프로그램의 운영과 실행은 “농업과 식량을 위한 연방조직 (BLE)”에 위탁되었는데 이를 위해 “유기농업 프로그램 실행 사업소 (Geschäftsstelle Bundesprogramm Ökologischer Landbau)”가 설립되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유기농업관련 모든 분야, 특히 생산자 교육과 소비자 홍보 그리고 기술개발과 연구 등에 관한 각종 중/장기 유기농업 육성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독일의 농림부는 2003년에 약 3600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이는 BUND의 GAK 유기농업 육성정책과 별도로 운영된다.

III. 맷음말

지난 10여 년간 유럽에서 유기재배 면적과 농가수가 꾸준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2000년 말의 광우병파동을 비롯해 식품오염에 관련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안전식품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1991년 유럽연합의 유기농업 관련규정이 제정 되었는데, 이를 통해 모든 EU-회원국에서 유럽연합차원 및 국가차원의 다양한 유기농업 육성프로그램들이 마련되었다. 그 중 유기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확보와 생산자에게 공정한 시장경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유럽연합차원의 유기식품의 인증과 표시제도는 각별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밖에도 생산자교육과 소비자홍보사업지원, 유통전략개발사업의 지원 그리고 생산기술의 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 등이 EU-회원국들이 유기식품의 생산과 가공 및 유통의 육성방안으로 함께 공

동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 프로그램들이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유기농업은 앞으로도 계속 큰 발전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AGÖL (1996): Rahmenrichtlinien für den ökologischen Landbau. SÖL-Sonderausgabe Nr. 17, Stiftung Ökologie & Landbau, Bad Dürkheim

BVEL (2004a): Ökologischer Landbau in Deutschland-Übersicht über den ökologischen Landbau in Deutschland, Stand: Juli 2004

BVEL (2004b): EG-Öko-Verordnung. Verordnung (EWG) Nr. 2092/91 des Rates vom 24. Juni 1991 über den ökologischen Landbau und die entsprechende Kennzeichnung der landwirtschaftlichen Erzeugnisse und Lebensmittel

BVEL (2004c): Agrar- und Ernährungspolitischer Bericht 2004

Lampkin, Nicolas (1999): Organic Farming in the European Union-Overview, Policies and Perspectives. Paper held at the EU Conference in Baden nr. Vienna, 27./28.5.1999

Nieberg, H. und R. Strohm-Lömpcke: Förderung des ökologischen Landbaus in Deutschland: Entwicklung und Zukunftsaussichten. In: Agrarwirtschaft 50, Heft 7, S. 410-420

Statistisches Bundesamt (2003): Agrarstrukturerhebung zum Öko-Landbau 2003

Yussefi, M. und H. Willer (2002): Ökologische Agrarkultur Weltweit 2002-Statistiken und Perspektiven. SÖL-Sonderausgabe Nr. 74, Stiftung Ökologie & Landbau, Bad Dürkheim

Yussefi, M. und H. Willer, I. Lünzer (2004): Öko-Landbau in Deutschland. Stiftung Ökologie & Landbau, Bad Dürkheim